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정부 제출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를 벌칙(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)에서 과태료(3천만원 이하)로 전환함 (안 제40조제2항제1호 및 제42조제1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